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

2022. 8.

국토교통부

목차

Chapter I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21

1. 추진 배경 ····· 21
2. 사업 개요 ····· 22

Chapter II **업무처리절차** 23

1. 신청 및 접수 ····· 25
2. 소득·재산 조사 ····· 48
3. 지원 결정 및 통보 ····· 61
4.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 63
5. 이의신청 ····· 70
6. 사후관리 ····· 76

Chapter III **기관별 주요 역할** 79

Chapter IV **개인정보보호** 80

서식 81

본 사업지침 외 사업 수행단계별 추가적인 안내사항이 통보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https://www.bokjiro.go.kr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 https://www.bokjiro.go.kr ⬆ https://www.myhome.go.kr
콜센터 연락처 1600-0777

Q&A 목차

Q1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38

Q2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38

Q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38

Q4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38

Q5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38

Q6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38

Q7 저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39

Q8 청년가구,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주세요. 39

Q9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39

Q10 주택 유형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까지 허용인가요? 39

Q11 부모님/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40

Q12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세, 사글세여도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도 지원대상인지요? 40

Q13 기숙사 등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 되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41

Q14 저는 월세로 2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 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41

Q15 저는 외국인 청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한가요? 41

Q16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42

Q17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43

Q18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보증금 2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저는 인정 가능한가요? 43

Q19 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대상인가요? 43

Q20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내역이 3개월이 안되는데 괜찮은가요? 44

Q21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월세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연세로 지급했어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44

Q22 A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월세지원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각 지자체 월세지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44

Q23 거주사실 입증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44

Q24 신청하는 달에 월세로 이사를 해서 이체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45

Q25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시에만 확인하면 되나요? 45

Q26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없이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월세 입금 통장의 증명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대체할 수 있나요? 45

Q27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이어야 하나요? 45

Q&A 목차

Q28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제출 가능할까요? 45

Q29 저는 주민센터 직원인데 월세지원 접수 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46

Q30 저는 주민센터 직원인데 신청인의 출입국 기록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46

Q31 대리신청인은 친구도 가능한가요? 46

Q32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47

Q33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 주거급여액 확인 후 청년월세를 다음달에 지급하나요? 47

Q34 청년월세 대상자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청년월세 자격이 중지 되는지? 47

Q35 변경서 양식이 궁금해요 47

Q36 원가구의 소득, 재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55

Q37 부모님과의 교류가 없는데 부모님 소득도 확인이 필요한가요? 55

Q38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에 변경되는데, 재산가액은 변동이 없나요? 56

Q39 저는 이혼한 청년입니다. 이 경우에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하나요? 56

Q40 저는 이혼하고 자녀가 있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도 저의 가구에 포함하나요? 56

Q41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56

Q42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중) 청년이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56

Q43 저는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저의 근로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57

Q44 사업소득 조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이 불안정해서 최근에 소득이 줄었는데 인정되나요? 57

Q45 저는 프리랜서라서 월소득이 불규칙합니다. 이런 경우 소득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58

Q46 가상화폐,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파악하나요? 58

Q47 추가 지출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이전소득도 조사 대상인가요? 58

Q48 부채 증빙서류에는 은행권, 카드권, 보험권 외 개인(또는 가족, 지인)간 차용 거래에 따른 증빙도 유효한가요? 증빙자료에 용도를 기재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을 목적으로 한 부채도 인정되나요? 59

Q49 주택가격의 가액 기준은 공시지가인가요, 거래가인가요? 59

Q50 청년 당사자와 부모의 재산 중 사업/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공장, 자동차 등) 재산도 산정대상인가요? 59

Q51 신청시 작성한 소득·재산 신고서 금액으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59

Q52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데 부모님의 소득, 재산을 조사할 경우 부모님께 통보가 가는지 걱정됩니다. 59

Q53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하나요? 60

Q54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청년월세지원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할지 걱정됩니다. 60

Q55 저는 지자체 공무원 인데요. 지원대상자가 이사 후, 월세지원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60

Q56 가구규모별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및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의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62

Q&A 목차

Q57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지원받은 사실로 인해 월세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62

Q58 지원받은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되나요? 지원받은 만큼 가족이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어서요. 62

Q59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66

Q60 제가 현재 조건에서는 지급대상인데 이후 계약 갱신/이사 등으로 월세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전세로 변경될 것 같아요). 이 경우 지급이 중단되나요?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66

Q61 계약내용 변경된 경우, 어디에 변경신청 하면 되나요? 67

Q62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신청이 필요한가요? 67

Q63 6개월 급여 수급 후 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지급 중지된 상황인데, 변경신청 하면 나머지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67

Q64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월세가 납부된 증거가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나요? 67

Q65 A시에서 살다가, B시로 이사하였습니다. 거주지 변경을 하면 될까요? 언제부터 B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68

Q66 저는 같은 곳에서 월세 금액/보증금만 변경되고, 신청기준을 충족하는데 그래도 임대차계약 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68

Q67 지원금을 받는 중에, 결혼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68

Q68 신청때와 달리 지급 받는 통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68

Q69 임대차계약은 했으나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69

Q70 제가 신용불량자라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월세지원금이 압류되므로 타인의 통장으로(같이 사는 가족, 친구) 지급가능한가요? 69

Q71 결혼 전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는데, 결혼 후 조건이 맞는다면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69

Q72 이의신청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74

Q73 이의신청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 시·군·구 사업팀이란 어디인가요? 74

Q74 이의신청은 우편, 방문, 이메일 모두 가능한가요? 74

Q75 이의신청이 30일 이내 가능한데, 30일 산정에 공휴일 등도 포함되나요? 74

Q76 이의신청 기간 중 이사 하였을 경우 급여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75

Q77 환수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78

Q78 제가 2달 전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받지 못한 달의 지원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78

Q79 제가 A시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B시로 이사한 후에 인용이 결정된 경우 다시 A시에 신청하러 가야하나요? 78

Q80 이의신청이 인용 결정되면 제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다시 지급신청을 해야하나요? 78

Q81 제가 환수 서면 통보를 뒤늦게 확인했는데 이미 20일이 지났어요. 이의신청이 필요한데 어떡하죠? 78

요약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지급규모		**생애 1회에 한하여 月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소요재원		**2,997억 원**(국비 1,367억 원, 지방비 1,630억 원) ※ '22년 국비 821억 원
신청시기		**'22.8.22 ~ '23.8.21 (1년간)**
신청주체	**본인 신청**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대리 신청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지원금 신청	유형	단계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절차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2단계	**신청서** 입력 ※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신청서** 작성
		3단계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업팀 신청서 확인 및 저장**	
		4단계	**시·군·구 통합조사팀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5단계	**시·군·구 사업팀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금 지급	지급 기관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대상자가 이사한 경우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월세지원금 지급
	지급일	지급기간(~'24.12) 내 **매월 25일**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이의신청	처리 방식	• 접수: **시·군·구 사업팀**에서 접수 • 심사: **가구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이의신청 TF 구성하여 자체 심사 및 결정
	절차	①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② 시·군·구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시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송부 ③ 시·도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통지**, 시·도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시 **국토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송부 ④ 국토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기간	**처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결과 통보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민원 상담 (콜센터)		• **전담 콜센터 운영**(LH, 1600-0777) • **지자체(시·군·구) 대표번호 개설 및 전담인력 배치** - 자체 해결이 어려운 세부 사항은 사업집행 총괄 기관(국토교통부)이 운영하는 콜센터와 연계하여 대응
지자체 사전준비		• 사업계획 수립, 집행관리, 담당인력 배치 및 민원대응 등 • **예산 편성**(지방비 매칭)
대국민 홍보		• **'신청·지급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영상·카드뉴스·이미지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 국민비서, 포털, SNS 등 채널 다각화 •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 집중 홍보**

【참고자료1】 제출서류 목록

※ 제출서류는 복사본, 파일 형식(JPG 등 이미지 파일, PDF)으로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시 증빙서류 제출 란이 없는 서류는 '기타서류' 란에 반드시 입력

서류명		제출대상자	비 고
월세지원 신청서		전원	
소득·재산 신고서		전원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 (부채 포함)만 입력 *소득사항은 공적자료 활용
서약서		전원	온라인 신청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미제출시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전원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없는 자	
전대차계약서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추가)**		전대차계약자	• 건축물대장 등 해당 주택의 내부구조 파악이 가능한 자료
월세이체 증빙서류 *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전원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증빙 내역 • 주택도시기금의 월세대출 등으로 금융기관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대출증빙서류 제출로 갈음
통장 사본		전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전부공개로 발급	**본인 기준**	전원	
	부 기준	전원	
	모 기준	전원	
	배우자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부 기준	기혼자	
	배우자의 모 기준	기혼자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가 별도거주 하시는 경우 부·모 각각의 임대차계약서 제출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부모님 재산(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확인용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부모님이 분양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최근 기존건물 평가액, 추가부담금 및 청산금 현황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부모님 재산 확인용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인정)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대리 신청 하려는 자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사실이혼 확인 판결문 등		사실혼· 사실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이혼자	
부채 증빙서류 *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인정, 다만 부모는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인정		채무자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확인 가능한 서류만 인정
난민인정증명서		난민	
임신 증빙서류 * 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외국인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경우

【참고자료2】 지자체별 사업팀·대표번호·접수처

지자체		사업팀명	대표번호	접수처
광역	기초			
서울		주택정책과	02-2133-7704	-
	종로구	사회복지과	02-2148-2575	주민센터
	중구	사회복지과	02-3396-5393	주민센터
	용산구	사회복지과	02-2199-7123	주민센터
	성동구	기초복지과	02-2286-6711	주민센터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02-450-7095 02-450-7096	주민센터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02-2127-5143	주민센터
	중랑구	사회복지과	02-2094-1708	주민센터
	성북구	생활보장과	02-2241-2387	주민센터
	강북구	어르신복지과	02-901-6727	주민센터
	도봉구	생활보장과	02-2091-3343	주민센터
	노원구	복지정책과	02-2116-3671	주민센터
	은평구	생활복지과	02-351-7085	주민센터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02-330-1788	주민센터
	마포구	생활보장과	02-3153-8813	주민센터
	양천구	주택과	02-2620-3465	주민센터
	강서구	생활보장과	02-2600-6723	주민센터
	구로구	사회복지과	02-860-2357 02-860-2832	주민센터
	금천구	복지지원과	02-2627-1782	주민센터
	영등포구	사회복지과	02-2670-3932	주민센터
	동작구	사회복지과	02-820-9667	주민센터
	관악구	생활복지과	02-879-5993	주민센터
	서초구	사회복지과	02-2155-6659	주민센터
	강남구	사회복지과	02-3423-5882	주민센터
	송파구	사회복지과	02-2147-2731	주민센터
	강동구	생활보장과	02-3425-5732	주민센터
부산		청년희망정책과	051-888-4611	-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051-709-4394	주민센터
	남구	미래성장담당관	051-607-3661	주민센터

지자체		사업팀명	대표번호	접수처
광역	기초			
부산	중구	일자리경제과	051-600-4472	주민센터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051-749-4832	주민센터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827	주민센터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051-419-4484**	**주민센터**
	서구	복지정책과	051-240-6685	주민센터
	강서구	지역경제과	051-970-4478	주민센터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051-665-5171	주민센터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051-550-4934	주민센터
	동구	일자리경제과	051-440-4501	주민센터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051-605-6342	주민센터
	북구	일자리경제과	051-309-5171	주민센터
	사하구	일자리복지과	051-220-5951	주민센터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051-519-4874	주민센터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051-310-5206** **051-310-4610**	**주민센터**
대구		청년정책과	053-803-2973	-
	중구	홍보소통실	053-661-2463	주민센터
	동구	경제지원과	053-662-2644	주민센터
	서구	기획예산실	053-663-2116	주민센터
	남구	미래안전과	053-664-2792	주민센터
	북구	기획조정실	053-665-2242	주민센터
	수성구	청년여성가족과	053-666-2623	주민센터
	달서구	일자리지원과	053-667-2553	주민센터
	달성군	교육청소년과	053-668-3276	주민센터
인천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906	-
	중구	일자리경제과	032-760-6952	주민센터
	동구	주민자치과	032-770-6078	**동구청**
	미추홀구	시민공동체과	032-880-4578	주민센터
	연수구	일자리정책과	032-749-8453	주민센터
	남동구	일자리정책과	032-453-6235	주민센터
	부평구	일자리창출과	032-509-6586	**부평구청**
	계양구	일자리정책과	032-450-8353	주민센터
	서구	공동체협치과	032-560-0884	주민센터

지자체		사업팀명	대표번호	접수처
광역	기초			
인천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617	주민센터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2513	주민센터
광주		청년정책관	062-613-2721	-
	동구	청년체육과	062-608-2243	주민센터
	서구	일자리청년지원과	062-350-4797	주민센터
	남구	혁신정책과	062-607-2682	주민센터
	북구	일자리정책과	062-410-6685	주민센터
	광산구	일자리정책과	062-960-3862	주민센터
대전		청년정책과	042-270-0832	
	동구	기획홍보실	042-251-6613	주민센터
	중구	경제기업과	042-606-7243	주민센터
	서구	미래전략실	042-288-2353	주민센터
	유성구	미래전략과	042-611-6018	주민센터
	대덕구	미래교육과	042-608-4582	주민센터
울산		건축주택과	052-229-6961	-
	중구	노인장애인과	052-290-3587	주민센터
	남구	노인장애인과	052-226-6935	주민센터
	동구	사회복지과	052-209-3453	주민센터
	북구	노인장애인과	052-241-7623	주민센터
	울주군	노인장애인과	052-204-0944	주민센터
세종	세종시	청년정책담당관	1533-1934	세종시청
경기		주택정책과	031-8008-4951	-
	수원시	청년정책관	031-228-3719	주민센터
	용인시	청년담당관	031-324-2762	**용인시청**
	고양시	청년담당관	031-8075-2725	주민센터
	성남시	청년정책과	031-729-8502	주민센터
	화성시	여성가족과	031-5189-2684	주민센터
	부천시	아동청소년과	032-625-3932	주민센터
	남양주시	미래인재과	031-590-8572	주민센터
	안산시	청년정책과	031-369-1655	주민센터
	평택시	복지정책과	031-8024-3045	주민센터
	안양시	청년정책관	031-8045-5787	주민센터

지자체		사업팀명	대표번호	접수처
광역	기초			
경기	시흥시	주거복지팀	031-310-3851	주민센터
	김포시	주택과	031-980-2416	주민센터
	파주시	청년정책담당관	031-940-8662	**파주시청**
	의정부시	교육청소년과	031-828-2432	주민센터
	광주시	주택정책과	031-760-4486	주민센터
	광명시	주택과	02-2680-6705	주민센터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031-5182-1243	주민센터
	군포시	건축과	031-390-0737	주민센터
	오산시	공동주택팀	031-8036-7769	주민센터
	양주시	주택과	031-8082-6667	주민센터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031-644-4183	주민센터
	구리시	소통공보담당관	031-550-2684	주민센터
	안성시	교육청소년과	031-678-6859	주민센터
	의왕시	일자리과	031-345-2714	주민센터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2561	주민센터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626	주민센터
	여주시	사회복지과	031-887-2953	주민센터
	동두천시	복지정책과	031-860-2375	주민센터
	과천시	복지정책과	02-3677-2866	주민센터
	가평군	복지정책과	031-580-2238	주민센터
	연천군	복지정책과	031-839-2824	주민센터
강원		건축과	033-249-3468	-
	춘천시	건축과	033-250-4408	주민센터
	원주시	복지정책과	033-737-2306	주민센터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033-640-5594	주민센터
	동해시	허가과	033-539-8593	주민센터
	태백시	건축지적과	033-550-2380	주민센터
	속초시	건축과	033-639-2445	주민센터
	삼척시	건축과	033-570-3472	주민센터
	홍천군	토지주택과	033-430-2198	주민센터
	횡성군	허가민원과	033-340-2344	주민센터
	영월군	도시교통과	033-370-2075	주민센터

지자체		사업팀명	대표번호	접수처
광역	기초			
강원	평창군	도시과	033-330-2459	주민센터
	정선군	도시과	033-560-2491	주민센터
	철원군	민원허가실	033-450-4649	주민센터
	화천군	민원봉사실	033-440-2473	주민센터
	양구군	민원지적건축과	033-480-2351	주민센터
	인제군	도시개발과	033-460-2125	주민센터
	고성군	경제투자과	033-680-3667	주민센터
	양양군	허가민원실	033-670-2162	주민센터
충북		청년정책담당관	043-220-2874	-
	청주시	청년정책담당관	043-201-1242	주민센터
	충주시	건축과	043-850-6422	주민센터
	제천시	건축과	043-641-6272	주민센터
	보은군	기획감사실	043-540-3027	**보은군청**
	옥천군	기획감사실	043-730-3783	**옥천군청**
	영동군	경제과	043-740-3732	주민센터
	증평군	예산감사관	043-835-3143	**증평군청**
	진천군	경제과	043-539-3483	주민센터
	괴산군	미래전략담당관	043-830-3056	**괴산군청**
	음성군	혁신전략실	043-871-5413	주민센터
	단양군	지역경제과	043-420-2435	**단양군청**
충남		청년정책과	041-635-2294	-
	천안시	청년담당관	041-521-5505	주민센터
	공주시	여성가족과	041-840-2588	주민센터
	보령시	기획감사실	041-930-3147	주민센터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041-540-2147	**아산시청**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041-660-2431	주민센터
	논산시	전략사업실	041-746-5022	주민센터
	계룡시	기획감사실	042-840-2082	주민센터
	당진시	평생학습과	041-350-3841	**당진시청**
	금산군	지역경제과	041-750-2652	주민센터
	부여군	전략사업과	041-830-2478	주민센터
	서천군	기획감사실	041-950-4219	주민센터
	청양군	미래전략과	041-940-2964	주민센터

지자체		사업팀명	대표번호	접수처
광역	기초			
충남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	041-630-1512	주민센터
	예산군	총무과	041-339-7237	주민센터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041-670-2064	주민센터
전북		대도약청년과	063-280-3882	-
	전주시	주거복지과	063-281-2198	주민센터
	군산시	주택행정과	063-454-4242	주민센터
	익산시	주택과	063-859-5909	주민센터
	정읍시	성장전략실	063-539-6881	주민센터
	남원시	건축과	063-620-6587	주민센터
	김제시	건축과	063-540-3080	주민센터
	완주군	건축과	063-290-2876	주민센터
	진안군	농촌활력과	063-430-8059	주민센터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84	주민센터
	장수군	일자리경제과	063-350-2193	주민센터
	임실군	경제교통과	063-640-2465	주민센터
	순창군	행정과	063-650-1241	주민센터
	고창군	상생경제과	063-560-2359	주민센터
	부안군	민원과 주택관리팀	063-580-4885	주민센터
전남		건축개발과	061-286-7722	-
	목포시	노인장애인과	061-270-8526	주민센터
	여수시	허가민원과	061-659-4089	주민센터
	순천시	사회복지과	061-749-6265	주민센터
	나주시	건축허가과	061-339-7243	주민센터
	광양시	건축과	061-797-2886	주민센터
	담양군	주민복지과	061-380-3317	주민센터
	곡성군	주민복지과	061-360-8222	주민센터
	구례군	종합민원과	061-780-2536	주민센터
	고흥군	공정허가과	061-830-5474	주민센터
	보성군	도시개발과	061-850-5592	주민센터
	화순군	도시과	061-379-3842	주민센터
	장흥군	민원봉사과	061-860-5677	주민센터
	강진군	민원봉사과	061-430-3428	주민센터

지자체		사업팀명	대표번호	접수처
광역	기초			
전남	해남군	건설과	061-530-5402	주민센터
	영암군	도시개발과	061-470-2453	주민센터
	무안군	건축과	061-450-5748	주민센터
	함평군	민원봉사실	061-320-1621	주민센터
	영광군	종합민원실	061-350-4682	주민센터
	장성군	민원봉사과	061-390-7491	주민센터
	완도군	주민복지과	061-550-5301	주민센터
	진도군	지역개발과	061-540-3875	주민센터
	신안군	민원봉사과	061-240-8292	주민센터
경북		청년정책관	054-880-2763	-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054-270-2834	주민센터
	경주시	일자리창출과	054-760-7968	주민센터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054-420-6704	주민센터
	안동시	사회복지과	054-840-5457	주민센터
	구미시	청년청소년과	054-480-2704	주민센터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53	주민센터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706	주민센터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06	주민센터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766	주민센터
	경산시	전략사업추진단	053-810-6622	주민센터
	군위군	경제과	054-380-6446	**군위군청**
	의성군	일자리창출과	054-830-6257	주민센터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454	**청송군청**
	영양군	경제일자리과	054-680-6583	주민센터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341	영덕군청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35	**청도군청**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84	주민센터
	성주군	기업경제과	054-930-6712	주민센터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47	주민센터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860	**예천군청**
	봉화군	도시교통과	054-679-6153	주민센터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473	주민센터

지자체		사업팀명	대표번호	접수처
광역	기초			
경북	울릉군	일자리경제교통과	054-790-6272	주민센터
경남		건축주택과	055-211-4473	-
	창원시	인구청년담당관	055-225-4575	주민센터
	진주시	주택경관과	055-749-8833	주민센터
	통영시	건축과	055-650-5745	주민센터
	사천시	건축과	055-831-3218	주민센터
	김해시	공동주택과	055-330-4314	주민센터
	밀양시	건축과	055-359-5388	주민센터
	거제시	건축과	055-639-4673	주민센터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72	주민센터
	의령군	일자리경제과	055-570-3103	**의령군청**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055-580-2545	**함안군청**
	창녕군	기획예산담당관	055-530-1074	주민센터
	고성군	군정혁신담당관	055-670-2713	**고성군청**
	남해군	청년혁신과	055-860-3468	주민센터
	하동군	도시건축과	055-880-2133	주민센터
	산청군	행정교육과	055-970-6143	**산청군청**
	함양군	혁신전략담당관	055-960-4112	**함양군청**
	거창군	인구교육과	055-940-8818	주민센터
	합천군	도시건축과	055-930-3435	주민센터
제주		건축지적과	064-710-2695	-
	제주시	주택과	064-728-3074	주민센터
	서귀포시	건축과	064-760-3013	주민센터

【참고자료3】 지자체 청년월세지원(중복사업) 현황(52개 사업)

지자체	시작 연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형식
서울	2020	청년월세지원	만19~39세 이하 1인가구 청년	月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현금
부산	2019	청년 월세 지원	만18~34세 부산시 거주 1인가구청년	月 10만 원	최대 10개월	현금
부산 부산진구	2022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	만18~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부부(혼인 5년이하)	50만 원	연 1회	현금
부산	2017	원거리 통학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지역소재 대학교 대학생 및 대학원생	月 5만 원 (연60만 원)	최대 12개월 (재지원가능)	현금
대구	2023	청년월세 지원	대구거주 만19~39세이하 1인가구청년	月 최대 15만 원	매년 선발	현금
대구 달성군	2019	2022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달성군 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만 18세~39세 이하 청년근로자	月 최대 30만 원	11개월	현금 (사업체)
인천	2020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지원	만19~39세 이하 (4대사회보험가입자 또는 만3개월 이상 3년 미만 창업자)	月 최대 10만 원	최대 8개월	현금
대전	2022	청년월세 지원	만19~39세 이하 무주택 1인가구 청년 및 청년부부	月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현금
세종	2022	청년 주거 임대료 (월세)지원사업	만19~34세 이하 6개월 이상 관내 거주 1인가구	月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현금
울산	2019	울산 청년드림 스페이스 지원사업	만19~39세 이하 무주택청년	매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현금
울산	2022	청년가구 주거비지원	만19~39세 이하 무주택미혼청년가구세대주	① 임차료 월10만 원 실비지급 ②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실비지급	최대 4년	현금
울산	2021	공공임대주택거주 신혼부부주거 지원사업	만19세 이상~만45세 이하 신혼부부 가구	① 임차료: 月5~25만 원 ② 관리비 5~10만 원 ③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실비	최대 10년	현금

지자체	시작 연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형식
경기 수원시	2021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9~34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月 최대 10만 원	최대 5개월 *생애1회	현금
경기 성남시	2020	지역상생형 대학생 반값 원룸 사업	-	月 최대 12만 원	1년	현금
경기 안양시	2021	청년 월세 지원	만19~39세 1인가구무주택청년	月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현금
경기 평택시	2021	청년월세 지원	만19~39세 청년1인가구	月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현금
경기 파주시	2022	청년 취업자 월세 지원	만 19~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파주시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 사업장 소재지가 파주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月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현금
경기 포천시	2022	포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만19~39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月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현금
강원 철원군	2019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대학 재학생	月 최대 30만 원	연 최대 12개월	현금
강원 화천군	2017	대학생 거주공간 지원금 지원사업	대학 재학생	月 최대 50만 원	연 최대 10개월	현금
강원	2020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대학 재학생	학기당 최대 100만 원	한 학기 (매학기신청, 선발)	현금
충북 옥천군	2021	청년월세지원사업	옥천 거주 만 19~39세 이하 청년	月 10만 원 (연 최대120만 원)	최대 4년	현금
충북 증평군	2022	증평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만18~39세	月 5만 원	12개월(1년 연장 가능)	현금
충북 괴산군	2021	청년취업자 및 청년농업인 주거비 지원	만19세~39세 이하	전월세비용 月 10만 원	최대 3년간 (분기별 지급)	현금
충북 괴산군	2019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및 주거비 지원	괴산 거주 중원대학교 학생	30만 원	1회 지급	현금
충남 서천군	2019	청년행복 주거비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月 최대 29만 원	최대 24개월 *자녀출생시 1년 연장	현금

지자체	시작 연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형식
충남 예산군	2020	청년 주택임대료 (월세) 지원사업	만18~39세 이하 군내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인가구청년	月 최대 5만 원	최대 24개월	현금
충남 천안시	2020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천안 및 충남 소재 대학 재학생	月 5~10만 원	최대 6개월	현금
충남 청양군	202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임차비 지원	해당없음	- 월세: 최대 月 20만 원 - 전세: 최대 年100만 원	최대 24개월	현금
충남 청양군	2017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사업	청양군 소재 대학 재학생	1학기 당(6개월) 50만 원	최대 24개월	현금
전북 군산시	2020	2021년 군산 STAY 청년창업 주거지원사업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① 보증금 3백만 원 ② 임대료 月 100천원	2년	현금 (LH)
전북 남원시	2022	남원시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月 최대 16만 원	최대 60개월	현금
전북 진안군	2021	진안군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만18~45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	月 최대 15만 원	최대 12개월 (생애1회)	현금
전북 부안군	2021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	만19~39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혼인시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月 최대 10만 원	최대 24개월	현금
전남	2019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만18~39세 노동자 및 사업자인 무주택 청년	月 10만 원	최대 12개월 (생애1회)	현금
전남 고흥군	2019	청년디딤돌 주거안정 지원사업	만19~49세 이하 청년	月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현금
전남 곡성군	2020	곡성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	만19세 이상~49세 이하 1인 가구	月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현금
전남 강진군	2021	강진품애(愛)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만19~39세 이하 무주택청년가구	月 최대 10만 원	최대 12개월	현금
전남 해남군	2020	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만18세~49세	月 10만 원	최대 10개월	현금
전남 영암군	2021	영암군 청년월세지원사업	만19~49세 이하 무주택청년	月 10만 원	최대 12개월 (반기별 지원)	현금

지자체	시작 연도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지원형식
경북 영양군	2020	청년전입자 주택임차료 지원	19세 이상 49세 이하	月 10만 원	36개월 (3년)	현금
경북 상주시	2022	청년전입자 주택임차료 지원	19세 이상 39세 이하	月 30만 원	10개월	현금
경북 상주시	2019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고등·대학생	학기당 30만 원이내	최대 8회	상주화폐 현금
경북 안동시	2020	전입대학생 기숙사비·주택임차료 지원	대학교 재학생	학기당 30만 원	최대 8회	현금
경남	2021	청년월세 지원	만19~34세 이하 세대주 청년	月 최대 15만 원	최대 10개월	현금
경남 창원시	2022	청년귀농인 주거복지 (월세) 지원사업	만 18세~50세	월 최대 30만 원	최대 12개월	현금
경남 창원시	2019	청년주거비 지원사업	만 19세~34세 이하 1~2 인 청년가구	월 최대 10만 원	최대 10개월	현금
경남 거제시	2020	전입대학생 기숙사비지원	거제대학교 기숙사로 전입한 대학생	매학기 20만 원 연간40만 원	최대 2년	현금
경남 창녕군	2022	청년 월세 지원사업	만19~49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월 최대 15만 원	'22.2~11월	현금
경남 남해군	2019	전입대학생 지원	남해군 소재 대학 재학생	학기당 30만 원 이내	기숙사 이용기간	현금
제주	2018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15세 이상~39세 이하 청년근로자	최대 30만 원	최대 2년간	현금 (사업자)

※ 서울형주택바우처, 시흥형 주거비지원사업, 전주형 주거급여, 남원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차감지원 가능

Chapter I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1 | 추진 배경

추진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비 부담 가중****

* **청년층(15~29세) 고용률:** ('19) 43.5% → ('20) 42.2%/ 실업률:('19) 8.9% → ('20) 9.0%

** **청년가구 PIR(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19) 5.0배 → ('20) 5.5배,
임차가구 RIR(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19) 17.7% → ('20) 16.8%,
수도권 RIR: ('19) 19.3% → ('20) 20.0%(0.7%p 증가)

*** 2년 이내 단기간 거주 비율도 상승('19년 81.6% → '20년 82.2%)하여 청년들의 주거 불안정성 상승

▶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필요** ※ 관계부처 합동 「청년특별대책」에 포함하여 발표('21.8.26)

추진 근거

▶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무회의 의결 ('21.8.24)을 통해 사업 시행 확정

(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업수행 추진체계

01 국토교통부 (사업집행 총괄)
-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 시·도 예산배정 및 정산 확인

02 시·도 (상위보조사업자)
- 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상황 점검
- 시·군·구 예산배정 및 정산 관리

03 시·군·구 (보조사업자)
- 신청·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 지원 대상 결정 및 지급
- 정산 및 사후관리

2 | 사업 개요

지원대상

▶ **대 상**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2.5% 적용)

※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 등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원칙),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부동산정보사이트 등 주택 내부형태 파악이 가능한 자료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 **소 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구성 준용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외)

지원내용

▶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22.8. ~ '23.8.(1년간)
- **지원결정 통보** '22.10. ~
- **지급기간** '22.11 ~ '24.12.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참고자료3】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현황 p.17 참고

Chapter II

업무처리절차

신청·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절차

Step 1
신청
(신청인)

-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제출 (필수서류 및 부채 증빙 등 필요서류 제출)

Step 2
신청서 등록·저장
(읍·면·동)
(일부 시·군·구 사업팀)

- 상담 및 신청 안내
-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 판단 (제외대상 여부 및 지자체 지원 중복 여부 확인,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반려 처리)
- 청년월세 지원 가구구성 (청년가구 및 원가구 가구원 구성)
- 구비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및 등록 후 저장 (구비서류 누락 및 부적정한 경우 보완 처리)

접수 즉시

Step 3
접수·조사
(시·군·구
통합조사팀)

- 신청서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청년가구·원가구의 가구원에 대해 조사 실시)

1일차	• 신청서 접수 처리 *청년가구·원가구 가구원 확인, 재산 조사용 증빙서류 누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2일차	• 공적자료 조회 요청
14일차	•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28일차	• 소득·재산 조회결과 최종 확인 * 신청조사 기간 소득·재산관련 변동사항은 소명자료 적용을 우선으로 함

Step 4
지원 결정
(시·군·구 사업팀)

-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판정
- 지원 결정 및 결과 통보
-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안내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1 | 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지원 대상

▶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①「청년기본법」상 청년(신청시점에서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34세 이하)으로, ②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③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④지원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인 청년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세가 20만 원 이상인데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이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 신청 가능**

(※ 외국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외국인 특례 적용하여 지원 가능)

- ① 신청연령은 신청시점 당시 출생연도 기준이며(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신청연도별 지원대상 청년의 출생연도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 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4년 생

- ② 신청대상인 청년이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서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별도 거주하는 경우

  * 친부·계모 또는 친모·계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과의 별도 거주가 아님
    (▶ 단, 부모 중 한 명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이혼 및 사망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만 있는 한부모 가정은 예외)

  • 청년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부모 및 형제·자매확인) 및 조회된 주민등록 세대원 정보(공동 거주여부)를 바탕으로 확인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세대분리를 통해 주민등록상 청년이 독립세대인 경우 지원대상 아님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만 신청 및 지원 가능(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가 아닌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공동으로 계약하여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은 공동계약 인원 수 또는 분담 비율로 나누어 각각 적용

- ③ 주거비부담 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보증부월세(반전세 포함)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이며,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님

  •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2호에 따라 연 2.5% 적용)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예시

- 보증금 2천만 원 & 월세 65만 원인 경우, 합산액은 69만 1,667원
  (= (2천만 원 × 2.5% ÷ 12개월) + 65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

- ④ 거주지 요건 ▶ 건축물 용도와 상관 없이(공공임대주택 제외) 실제 거주하며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 <참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주택 등에 거주하는 유형'

제2조(주택등의 범위와 종류) 「주거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주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
2.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5.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거주시설
6.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 <참고> 외국인 특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준용(사업안내 p.32))

-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및 재외국민은 제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다음의 경우 지원대상으로 분류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다)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난민법」제32조(기초생활보장)에 따르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 <참고> 외국인/귀화의 경우, 가족관계 증빙서류

1. 외국인에 대한 특례

<table>
<tr><th rowspan="3">외국인에 대한 특례</th><th colspan="4">제출서류</th></tr>
<tr><th rowspan="2">기본</th><th colspan="2">부모가 국내에 있는 경우</th><th rowspan="2">부모가 국내에 없는 경우</th></tr>
<tr><th>외국인등록번호 있음</th><th>외국인등록번호 없음</th></tr>
<tr><td>(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td><td rowspan="2">가족관계증명서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기준)
임신 증빙서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공적자료 조회 가능</td><td rowspan="3">외국인 가족관계는 공적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만을 통해 확인</td><td rowspan="3">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외</td><td rowspan="3">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외</td></tr>
<tr><td>(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민법」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td></tr>
<tr><td>(다)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난민법」제32조(기초생활보장)에 따름)</td><td>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공적자료 조회 가능</td></tr>
</table>

2. 귀화한 경우

<table>
<tr><th colspan="3">부모가 국내에 있는 경우</th><th rowspan="2">부모가 국내에 없는 경우</th></tr>
<tr><th>부모가 귀화한 경우</th><th>부모 귀화 X
(외국인등록번호 있음)</th><th>부모 귀화 X
(외국인등록번호 없음)</th></tr>
<tr><td>내국인과 동일한 서류 제출</td><td>외국인 가족관계는 공적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만을 통해 확인</td><td>가족관계증명서류 제외</td><td>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외</td></tr>
</table>

지원 제외대상

①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청년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주거급여 신청 안내

②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청년 본인 외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 소유자가 있는 경우(공유지분 소유 포함)에도 제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③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④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은 지원 가능

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월세환산액=(보증금×2.5%÷12개월)+월세액] 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지원 가능**

⑥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공동 계약으로 일정 비율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개별 신청 가능(임대차계약서상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는 경우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

▶ 단, 셰어하우스 등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⑦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⑧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참고자료3】지자체 청년월세지원 현황 참조, p.17)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또는 이자부담 지원 사업 등은 중복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 지자체 월세지원 수혜이력 확인 및 중복 지원 불가 지원대상 제외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능 (지자체별 사업 목록 참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에서 지자체 사업 수혜대상 여부 확인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직접 신청(변경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로그인,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등 신청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일부 지자체는 시·군·구에서 접수(【참고자료2】지자체 접수처 참조, p.9)

-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임대차 계약 및 급여지급 계좌 예외 인정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므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참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최종 지원 결정 이전에 구비서류 제출 및 누락여부 확인

신청지역

▶ **신규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에 신청기간 동안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 **변경신청** 청년월세지원 대상 선정 이후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변경신청서 제출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임대차 계약내용(월세금액·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함

★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사업안내 p.241)

가. 급여계좌 원칙

- 모든 사회복지 보조금은 반드시 수급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회사 또는 우편 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급여계좌 예외 [시행령 제36조의3 관련]

-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또는 우편관서) 계좌 개설이 곤란한 아래 수급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함
  - (1) 수급자로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자(성년후견 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수급자 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자 등)
  - (2) 수급자로서 급여를 계좌로 입금할 경우 압류를 당하는 채무불이행자(종전의 신용불량자)
  -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 (4)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 ⇒ (1), (2), (3), (4)의 경우 해당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음
  - (5) 친인척이 없는 미성년 단독가구 또는 무연고 신원확인 곤란자 등 수급자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장기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혈족 이외 제3자 중 이해관계자(실제 수급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는 자)의 계좌로 설정 가능
    -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급여계좌를 제3자의 계좌로 등록한 경우, 보장기관은 반드시 급여관리자 지정 및 반기별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6) 법령에 따라 제3자 또는 기관(학교·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가)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법 제9조제3항]
    - (나) 주거급여 : 임대인명의 계좌[「주거급여법」제7조제4항, 「주거급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 나목]
      -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
      - – 수급자가 「주거급여법」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월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인이 월차임 직접 수령 신청서(「주거급여법 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를 제출한 경우
    - (다) 교육급여
    - (라) 장제급여[법 제14조제2항]
- (1)~(5)의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기초생활급여 대리수령 신청서(서식 15호)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가) 급여 지급대상자인 수급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나) 상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대리수령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대리 설정 이해관계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서류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①임대차계약 및 ②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③통장 사본, ④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①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는 1)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2)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3)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이 없는 임대차계약서만 임대인과 소유자 일치여부 확인

  ** 주택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후 거주 중이며 월세 이체가 입증되면 지원 가능

-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부동산정보사이트 등 주택 내부형태 파악이 가능한 자료
-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 내 거주시설 등의 경우, 입실(거주사실) 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제출(기숙사비 등의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나,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을 통해 월세지원 가능

②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해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

▶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제출(보낸사람, 받는사람 명시 필수)

※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 가능. 다만 국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 대출 사업으로 월세를 금융기관이 직접 임대인에게 이체하는 경우에도 인정(대출확인서류 추가 제출), 월세 후납으로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이체한 달에 신청서 제출 요망

- 계좌이체 내역 : 계좌이체 수령인으로 임대차계약서 상에 임대인이 명시된 온라인 또는 스마트 뱅킹 계좌이체 내역서(수령인이 임대인이 아니어도 임대차계약서상 입금계좌가 동일하면 인정)
- 통장 사본 : 임대인에게 계좌이체 내역이 포함된 페이지 사본
-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내역 캡쳐 이미지
  : 카드 결제방식으로 임차료 납부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결제수단(페이시스템)등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 계좌(카카오페이, 토스 등)로 이체한 내역의 캡쳐 이미지 제출
-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 현금으로 월세 납부 또는 위의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된 영수증 제출

③ 통장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라 대리수령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 사본 제출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신청인이 미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혼인 경우에는 본인 및 본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등 필요서류

▶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 이외에도,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

- 특히, 소득·재산 조사 시 주거 목적의 부채는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므로, 금융기관 및 금융권 이외 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조회 및 발급받은 부채(대출 내역 및 대출금 잔액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청년가구**의 경우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하며, **원가구**의 경우에는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모두 인정

접수 처리

▶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는 즉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신청서 정보 입력 및 서류 등록

- 신청서 접수 이전에 구비서류 및 누락여부를 반드시 확인, 구비서류 누락 시 신청인에게 보완 및 반려 요청

▶ 신청이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청년월세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여부를 판단

▶ 신청인이 제출한 청년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및 청년의 주민등록세대원 정보 등을 기준으로 청년가구와 원가구 구성 및 조사대상 가구원을 확정한 후 저장(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사업팀) 및 접수(시·군·구 통합조사팀) 처리

★ **'청년가구 & 원가구 구성 원칙 및 절차'(p.31) 와 '청년가구 & 원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 사례'(p.34~p.37) 참조**

▶ 거주 지역, 임대차 계약 내용(임차보증금, 월세, 계약자 변경 등)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는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청년가구& 원가구 구성 원칙 및 절차

▶ 청년월세지원 대상 소득·재산 조사 및 판정 과정에서 청년가구와 청년 원가구의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이 각각 상이하므로,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가구구성 및 조사대상 가구원 확정이 중요

▶ 청년가구 및 원가구 개념 및 구성 원칙

- 원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가 불필요한 경우(청년가구만 판단)

  ▶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만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적용 프로세스

Step 1 신청 및 지원대상 자격 요건

신청연령·부모 별도거주·주거 점유형태·주거비부담·지원주택 요건 충족 여부

- ☑ 모두 충족 → Step 2 로 !
- ☒ 미충족 → 신청 및 지원 불가

Step 2 신청인(청년)의 기혼 여부 확인

- ☑ 기혼 (미혼부·미혼모, 이혼한 경우 포함) → Step 4 ▶ Step 5 ▶ Step 7-1 로!
- ☑ 미혼 → Step 3 로 !

Step 3 신청인(청년) 연령 확인

- ☑ 만 30세 이상 → Step 4 ▶ Step 5 ▶ Step 7-1 로!
- ☑ 만 30세 미만 → Step 4 ▶ Step 5 ▶ Step 6 로!

Step 4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

※ 부모 모두 사망하여 부모가 없는 경우는 청년가구만 구성

-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Step 5 공적자료 조회 및 소득재산 조사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공적자료 조회

Step 6 신청인(청년가구) 소득 중위소득 50% 이상 여부 확인

- ☑ 50% 이상 → Step 7-1 로!
- ☑ 50% 미만 → Step 7-2 로!

Step 7 소득재산 평가

- **1 청년가구만 평가**
  -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총 재산가액 107백만 원 이하
- **2 청년가구 & 원가구 평가**
  -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07백만 원 이하
  -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380백만 원 이하

★ 가구 범위 확정 절차

▶ 원가구 적용 여부에 따라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조사 시 가구원으로 확정하여 소득·재산 조사 실시 및 결과 판정 시 가구원수에 반영

1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조회 후 일괄 등록

2 청년가구 구성 (담당자 확인)

-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청년가구 적용 시 포함·제외 될 가족 확인 후 추가 및 삭제

3 원가구 구성(필요시) (담당자 확인)

-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원가구 적용 시 포함될 가족 확인 후 추가

동일 주민등록상 가구원 등록

- 신청인(청년)과 주민등록표 상 등재된 세대원을 조회 후 일괄 등록

청년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 삭제, 별도 주민등록상 배우자 및 직계비속 추가

-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동거인 제외
- 별도 주민등록상 신청인(청년)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직계비속 추가

청년가구에 부모님 추가

- 청년가구에 별도 주민등록 상 신청인(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추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람(신청인은 가구원으로 반드시 등록)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
- 외국에서 최근 6개월 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중인 사람
- 교도소, 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사람
- 보장시설거주자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행방불명중인 사람
-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재외국민

01 02 03 청년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 사례

01 신청인이 **혼인**(이혼)인 경우

청년가구	본가	총재산가액	합산소득
신청인+배우자		107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2인 가구) 1,956,051원 이하
신청인+배우자+자녀		107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3인 가구) 2,516,821원 이하
신청인+배우자+자녀+형제		107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4인 가구) 3,072,648원 이하
신청인+배우자+자녀+모	부	107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4인 가구) 3,072,648원 이하
신청인+배우자+자녀+모+형제	부	107백만 원 이하	합산소득 (5인 가구) 3,614,709원 이하

※ 이혼한 경우 배우자 제외.

※ 배우자·자녀는 신청인과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로 등록. 이외 민법상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등록.

02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 30세 이상 또는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 배우자·자녀는 신청인과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로 등록. 이외 민법상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등록.

03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인 경우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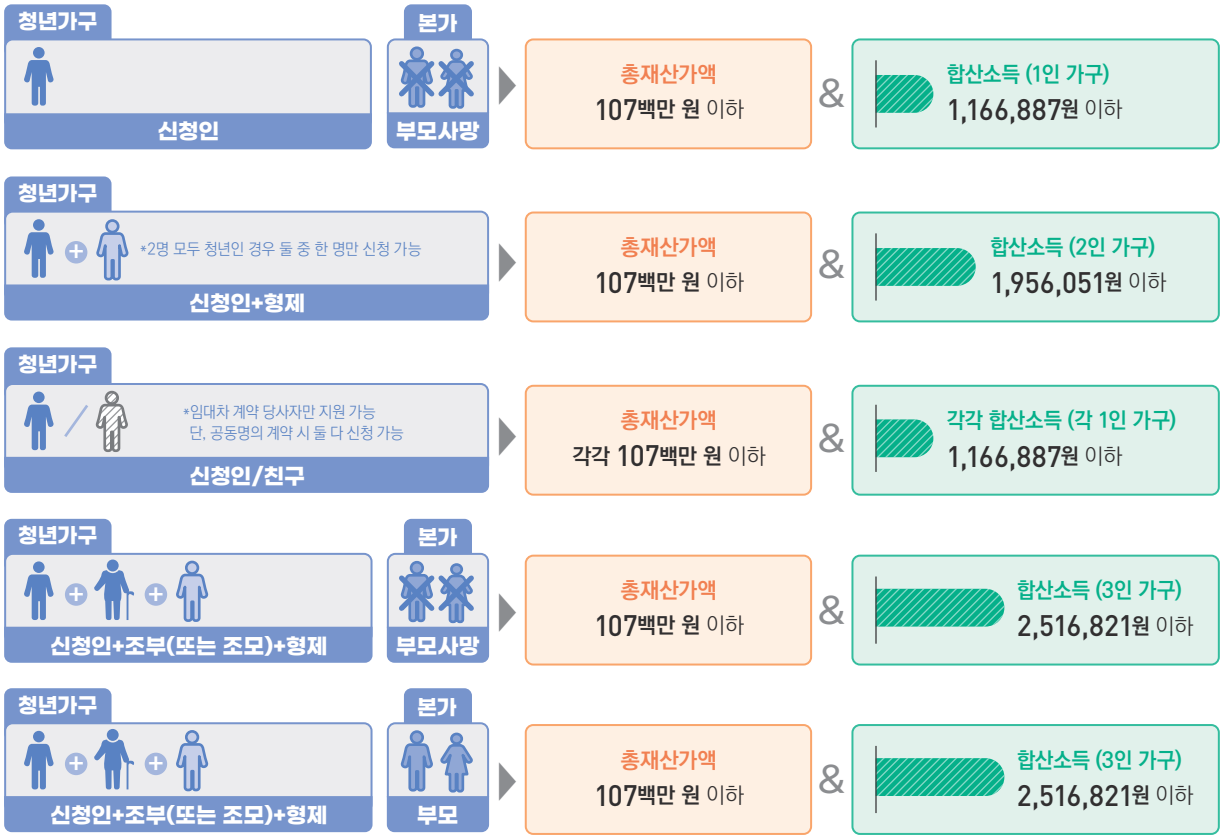

※ 배우자·자녀는 신청인과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로 등록. 이외 민법상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등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

04 청년가구&원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 사례

04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
부모가 있는 경우(부모 이혼 포함)
(신청인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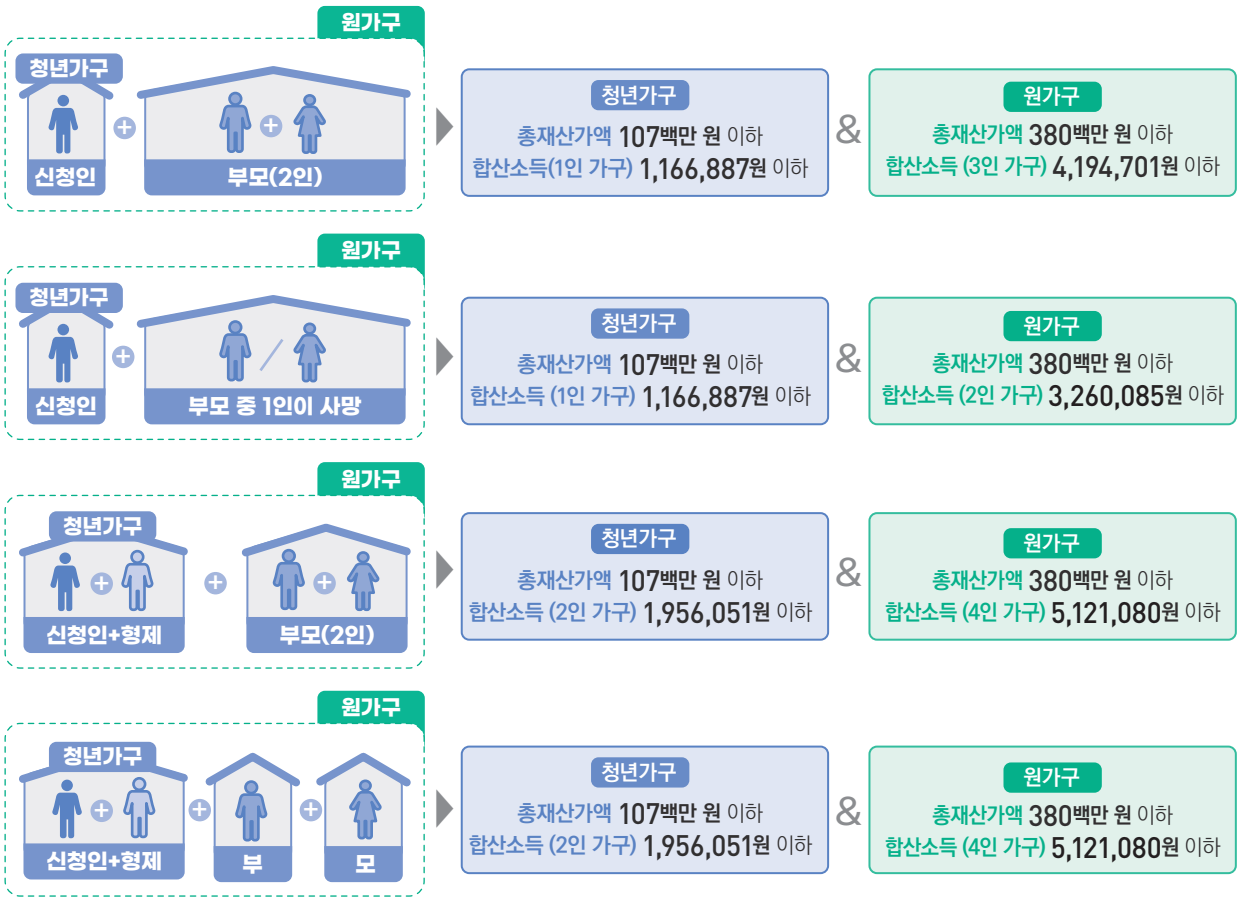

※ 부모가 재혼한 경우 계부·모는 원가구에 미포함.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

신청 및 접수

Q&A

Q1 제가 대상자인지 알고 싶어요.

A.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모의계산, 마이홈 포털(myhome.go.kr)-자가진단서비스,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가진단서비스는 5월부터 운영 예정)

Q2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A. 지원대상 연령(만 19세 ~ 만 34세 이하)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22년 인정대상: 1987년생~2003년생 / '23년 인정대상: 1988년생~2004년생
  다만, 만 30세 여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합니다.

Q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수혜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1회라도 수혜 받은 경우 제외)

* 주택소유자 기준: 청년가구 가구원 모두 주택 소유자가 아니어야 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LH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운영 중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분양전환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Q4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는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A.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5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상가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나요?

A. 주택소유 여부는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준주택), 상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소유한 오피스텔 및 상가는 소득·재산 평가시 총재산가액에 반영됩니다.

Q6 청년가구 및 원가구 구성시 직계혈족 및 직계비속은 누구인가요?

A. 민법상 직계혈족은 자신을 기준으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처럼 본인을 출생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하며, 직계비속이란 자신을 기준으로 출산된 '자녀, 손자/손녀' 등을 의미합니다.

신청 및 접수

Q&A

Q7 저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참고〉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p.52 확인

Q8 청년가구, 원가구를 구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알려주세요.

A. 〈참고〉 청년가구 & 원가구 구성 및 소득·재산 조사 사례 p.34~p37. 확인

예시 1)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언니)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예시 2)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 1인 가구(본인) /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예시 3) 저는 결혼하였어요.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배우자) / 원가구: 미적용

예시 4) 제 나이는 만 31세(만 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미적용

Q9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인가요?

A. 원가구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구성되므로 부모님이 이혼 후 각각 재가하신 경우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에 친부 및 친모만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Q10 주택 유형에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까지 허용인가요?

A. 급여 대상의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등)과 「주택법」제2조 제1호의 준주택(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임차료가 발생하는 시설에 한함)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
- 그 밖에 소매점,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시설 (필수서류 제출 가능 시설)
-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
- 전세로 거주할 경우는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

신청 및 접수

Q&A

Q11 부모님 / 친척 소유의 주택에서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지원 가능할까요?

A. 청년을 기준으로 임대인이 부모님, 형제 등 2촌 이내 혈족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Q12 반전세 혹은 하숙집, 기숙사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세, 사글세여도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도 지원대상인지요?

A. 전세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반전세는 보증부월세로 인정됩니다. 또한,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서류가 갖추어진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1】 제출서류 목록 p.8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임대차계약서의 증빙서류 원칙은 다음과 같음.

1. 확정일자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2.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3.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4.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5. 전대차계약인 경우 임대차계약서(1,2,3) 및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월세이체 증빙서류 예시: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내역, 임대인의 영수증, 인터넷을 이용한 '페이'등을 사용했을시 결제사본 (카카오페이, 토스 등)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 하숙집의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임대사업자등록증**
- 대학 기숙사의 경우: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 회사 기숙사의 경우: 임대차계약(또는 입실확인서(납부금액이나 이체증빙)),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가 임차후 직원에게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전대차계약의 예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참고자료1】 제출서류 목록 p.8 참조)
- 사업장 신고된 원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시설이면 가능

대학기숙사, 연세 및 사글세의 경우, 월세금액 반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세금액: 전체 계약금액/계약기간

  * 예시: 대학기숙사에 4개월동안 거주하고, 120만 원을 냈다면 월세는 120/4로 계산하여 30만 원으로 인정

- 기숙사 계약기간 중 방학 등의 사유로 본가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주소지 변경을 해야하고 이 시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됩니다. 다만, 사업기간 내에 다시 기숙사를 들어간 후, 주소지 변경을 한다면 총 지원기간 최대 12개월까지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및 동일 주소지 계약내용 변경(월세, 보증금 변동)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3 기숙사 등 단기임대 계약이 만료 되어도 추가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인 '24년까지 12개월(회)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으로 변경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시행 하지 않지만,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심사 후 지원여부 결정을 통지합니다.다만,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구두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월세지원을 받지 못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4 저는 월세로 20만 원 미만의 금액을 내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20만 원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 총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만 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시는 경우,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예시) – 월세가 10만 원이 월세인 경우: 10만 원 지원
– 월세가 30만 원이 월세인 경우: 최대 금액인 20만 원 지원

Q15 저는 외국인 청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인에 대한 특례':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③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자·계모자 관계와 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미성년 자녀는 만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함(「민법」제4조 참조). 양육이란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보장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다)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난민법」제32조(기초생활보장)에 따름)

※ 이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난민인정증명서를 제출받아 조사·선정

Q16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 '청년가구'로서 소득·재산이 평가되며, '청년가구'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제출 필요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것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재산요건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해 아래의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총재산가액 : 107백만 원 이하(행복주택 중 대학생 입주자격+차량가액)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직업 등의 사유로 청년과 배우자가 별도거주 하는 경우,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최대 20만 원씩 지원 가능

신청 및 접수

Q&A

Q17 배우자/형제/친구와 함께 살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눠서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가족의 경우: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합니다.

▶ 가족의 범위: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제출 필요

- 가족이 아닌 경우: 청년 다인이 공동임차인으로 계약하였다면 각각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1인당 분담액기준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기준은 동일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나누며, 지분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시) 친구 2명이 보증금 1억, 월세 100만 원 주택에 공동 거주할 경우:

(지분이 6:4로 명시되었을 경우)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60만 원 /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인정되어 1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각각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인정되어 2명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이나 월세 관련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적용합니다.

Q18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보증금 2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저는 인정 가능한가요?

A. 예시) 보증금 2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경우(보증금의 월차임전환율 2.5% 적용)

→ 2,000,000×2.5%÷12=4,167원+월세액 650,000원= 총 654,167원, 70만 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Q19 보증금 5천만 원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도 지원대상인가요?

A.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신청 및 접수

Q&A

Q20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일 기준 이체내역이 3개월이 안되는데 괜찮은가요?

A.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임차인이 월세를 성실히 이체하고 있는지, 급여 지급을 위해 신청월의 전월 및 당월분 월세를 이체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이상인 경우 3회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월세 이체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 임대차계약 5월, 5~8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6월, 7월,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6월, 6~7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6월, 7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7월, 7~8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7월,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7월, 7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7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임대차계약 8월, 8월 월세 이체, 8월 신청: 8월 월세 이체내역 제출

Q21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에는 월세금액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연세로 지급했어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차계약서 및 납입영수증상 월세 계약이나 실제 1년분 월세를 선납한 경우에는 월세가 아닌 연세로 신청(연세 납입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하셔야 하며, 월세환산금액은 실제 납부한 금액에 거주기간을 나누어 산출한 금액입니다. 다만,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보증금을 추가 입력해야 합니다.

Q22 A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월세지원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각 지자체별 월세지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등은 해당하지 않음

또한, 각 지자체 월세지원 사업은 【참고자료3】 지자체 청년월세지원 현황 p.17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23 거주사실 입증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전입신고(공적자료를 통해 보장기관에서 확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또는 등기부등본 추가 제출),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 등), 입실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

Q&A

Q24 신청하는 달에 월세로 이사를 해서 이체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A. 필수서류에 월세이체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체내역이 없다면 이후 월세를 납입한 달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25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시에만 확인하면 되나요?

A. 월세 이체내역은 최초 신청시 확인 후 급여 지급 중에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해 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월세 이체내역을 재확인 하여야 합니다.

Q26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없이 월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월세 입금 통장의 증명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대체할 수 있나요?

A.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고시원 등 준주택 등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27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청년 본인 명의이어야 하나요?

A. - 계좌입금 증빙내역: 2촌 이내 혈족 명의 통장 가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원칙이지만, 2촌 이내 혈족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년의 거주사실 입증(전입신고·월세지급)이 필요합니다.

Q28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가 제출 가능할까요?

A. 개인을 기준으로 본인 및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기준, 父기준, 母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혼자인 경우 본인기준, 배우자기준, 본인 父기준, 본인 母기준, 배우자 父기준, 배우자 母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 및 접수

Q&A

Q29 저는 주민센터 직원인데 월세지원 접수 시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임대차계약서의 증빙서류 원칙은 다음과 같음.

1. 확정일자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2.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3.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4.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5. 전대차계약인 경우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1,2,3) 및 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월세이체 증빙서류 예시: 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카드 결제내역, 임대인의 영수증, 인터넷을 이용한 '페이'등을 사용했을시 결제사본 (카카오페이, 토스 등)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1】 제출서류 목록 p.8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0 저는 주민센터 직원인데 신청인의 출입국 기록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출입국 기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는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인의 출입국 기록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출하도록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Q31 대리신청인은 친구도 가능한가요?

A.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자격은 청년본인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Q32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주거급여(월차임분)에서 20만 원 이상 지원받고 있다면 사업대상자가 아니지만, 20만 원 미만이라면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월세는 30만 원이지만 주거급여(월차임분)를 10만 원 지원받는 경우,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에서 1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본 사업에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Q33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 주거급여액 확인 후 청년월세를 다음달에 지급하나요?

A. 급여 지급은 사후지원 원칙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당월 급여는 전월 주거급여액(월차임분, 정산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Q34 청년월세 대상자가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청년월세 자격이 중지 되는지?

A. 청년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주거급여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청년월세 지원 자격은 유지되며, 월세지원 월 최대금액인 20만 원과 주거급여액(월차임분, 소급지급액 포함)의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차액이 없는 경우는 미지급)

Q35 변경서 양식이 궁금해요

A. 〈서식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확인. p.81

2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 통합조사팀)

공적자료 조회를 통한 소득·재산 조사

▶ 신청·접수 시 제출된 신청서 및 가구구성을 바탕으로 공적자료 조회 중심으로 소득·재산 조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

- 소득·재산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행정자료를 우선 적용

※ 주거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생략하고 지원 결정

▶ 청년월세 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1회**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 공적자료 등의 소득·재산 조사 1회 실시 결과를 기초로 월세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추가 확인조사 없이 잔여 지급기간 동안 월세지원 실시
- 주소지나 임대차계약 변경으로 변경신청 하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조사는 생략하고 지원금 수준 변동을 반영하여 잔여기간 지급

▶ 최대 12개월간 분산 지원하는 것이므로, **타 복지사업 소득 산정 시** 청년월세 한시 지원액은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와 협의 완료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방법 및 기준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 **재산평가액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거용만 인정)**

★ **청년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1억 7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월세 지원사업 소득·재산 산정 기준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일 것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재산요건 :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가구는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총재산가액 : 107백만 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①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것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② 재산요건 :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 원가구는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총재산가액 : 380백만 원 이하
  - 총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재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봄

소득·재산 평가액 산정 항목

▶ 소득평가액을 구성하는 소득 항목

-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이자배당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
-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성 급여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 ㉲ (근로소득공제) 소득항목별 합산 금액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 합산 금액의 30%를 제외

▶ 재산평가액을 구성하는 재산 항목

-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 「지방세법」제104조제1호, 2호, 3호에 따른 토지(논, 밭, 임야, 주택의 부속토지 등), 건축물(건물,시설물 등) 및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의 시가표준액

    *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 종중재산 등 공동재산은 공동명의로 변경 등기 완료시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하고, 타인에게 명의 변경 시에는 재산산정에서 제외

  - 임차보증금: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제6조제14호~제18호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 (자동차) 자동차가액
  -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부채) 각 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단, 원가구는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만, 청년가구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금융회사 등에는 제도권 금융회사인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법률용어는 아니나 통상적으로 시중에서 사용하는 용어)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체도 포함

• 금융회사 대출금,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금융회사 대출금) 금융권 대출금

<금융권의 범위>

-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 대부(중개)업체

※ 제도권금융회사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민원신청/민원안내/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대부(중개)업체는 금융위원회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서비스(https://www.clfa.or.kr/등록업체조회)에서 조회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의 대출금

<참고>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1 근로소득 中 상시근로소득

- 정의: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산정내용: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② 근로복지공단 자료(직장가입자의 월평균보수)
    - ②-1 산재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②-2 고용보험 :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수
  - ③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④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확인방법
  - ①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직장보험료조회 – 평균보수월액
  - ②-1 **산재보험 월평균보수액**
  - ②-2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소관 사업장 확인
  - ③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❶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 기준소득월액 확인
    ❷ 관할 지사 유선 문의(본인확인 필요)
  - ④ **국세청 종합소득중 근로소득**: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근로소득

※ 사회보험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동일사업장에서 사회보험 근로소득자료와 국세청 사업소득 자료가 동시에 확인된 사람(고용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반영

※ 동일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 상시근로소득만 반영

2 사업소득 中 기타사업소득

- 정의: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 산정내용: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사업소득

3 재산소득

1. 임대소득

- 정의: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임대소득
- 산정내용: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 / 12
-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임대소득

2. 이자소득

- 정의: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이자·배당소득
- 산정내용: 이자·배당소득 / 12
-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 전자신고결과 조회 – 이자·배당소득

4 기타소득

1. 공적이전소득

- 정의: 각종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 산정내용: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휴업·장해·유족급여, 상병보상금)
- 확인방법: 전월 수령한 급여액

5 일반재산

1. 토지·건축물·주택

- 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산정내용: 시가표준액
  * (토지) 개별공시지가 x 면적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건축물·시설물 등)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확인방법: (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건축물·시설물 등) 위택스–지방세정보–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2. 선박·항공기

- 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
- 산정내용: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3.5)
- 확인방법: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고시/공고)

3. 회원권

- 정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회원권 등)
- 산정내용: 시가표준액(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확인방법: 위택스–지방세정보–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4. 임차보증금

- 정의: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5. 분양권

- 정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산정내용: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 조사후 파악된 금액
- 확인방법: 제출서류(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현황)

6. 조합원입주권

- 정의: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산정내용: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확인방법: 제출서류

-추가부담금(=추가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 추가부담금을 합한 금액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6 자동차

- 정의: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산정내용: ① 보험개발원 → 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③ 국토부 취득가액('최초취득가액x잔가율'과 '취득가액x잔가율'중 큰금액) → ④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종류 시가표준액 순으로 반영
- 확인방법: ❶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차량기준가액 조회
  ❷ 지방세정

7 부채

- 정의: 임대보증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금융회사 외 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산정내용: 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만, 원 가구의 경우 주택소유 및 임차보증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만 증빙서류 제출 시 산정하여 반영
- 확인방법: 금융회사 등 대출받은 기관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및 주택소유(원 가구만 해당) 등 주거용 목적으로 받은 대출금 잔액 조회 후 증빙서류 발급받아 확인 및 제출

Q36 원가구의 소득, 재산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서식4〉 소득·재산신고서 p.85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Q37 부모님과의 교류가 없는데 부모님 소득도 확인이 필요한가요?

A. ❶만 30세 이상, ❷혼인(이혼), ❸미혼부·모, ❹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972,406원/월)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외에는 예외 없이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별개의 가구에 속하는 경우, 관계가 단절된 경우도 포함) 청년을 중심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에 표시되는 부모를 모두 포함하여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 만 30세 여부는 신청일 기준 생년월일로 판정(기초생활보장제도 준용)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가구 기준〉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원/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

예시 1) 저는 25살 미혼이고,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가구 가구원은 본인 및 언니로 2인 가구 기준인 1,956,051원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가구원은 본인, 언니, 부모님으로 4인 가구 기준인 5,121,080원

예시 2) 저는 20살 미혼이고, 친구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저의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가구 가구원은 본인으로 1인 가구 기준 1,166,887원 / 원가구(청년가구+부모) 가구원은 본인, 부모님으로 3인 가구 기준 4,194,701원

소득재산 조사

Q&A

Q38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에 변경되는데, 재산가액은 변동이 없나요?

A.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소득·재산 산정기준에 의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및 100%, 재산은 컷오프(청년가구 107백만 원, 원가구 380백만 원) 방식으로 평가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22년도는 '22년 중위소득 금액으로, '23년도는 '23년 중위소득 금액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컷오프 방식인 재산가액은 변동 없이 '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할 계획입니다.

Q39 저는 이혼한 청년입니다. 이 경우에 원가구의 소득을 확인하나요?

A. 이혼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개별가구로 인정하여 원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청년가구만 소득·재산 조사 실시)

Q40 저는 이혼하고 자녀가 있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녀도 저의 가구에 포함하나요?

A. 청년가구의 가구원은 본인+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으로, 이혼한 청년의 경우 본인+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되며, 직계비속인 자녀가 청년과 함께 살지 않는 경우(이혼한 배우자가 양육하는 경우 또는 청년의 부모 등이 양육하는 경우 등 포함)에도 청년가구의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Q41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A. 장학금의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상시근로소득으로 조회되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p.5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2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중) 청년이 부모님과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가요?

A. 다음 ①~②의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자 가구에서 개별 보장 가능합니다.

①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며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 하는 경우

② 만 30세 미만의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Q43 저는 이제 막 직장에 취업한 청년입니다. 저의 근로소득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근로소득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공적기관의 월평균보수액 자료로 확인합니다. 다만, 공적자료 확인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이 확인될 경우 다음순으로 반영됩니다.① 건강보험 보수월액 ② 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③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④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가장 최근의 보수월액을 근로소득으로 산정하게 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또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조회-직장보험료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44 사업소득 조사 기간은 언제인가요? 코로나19 이후 사업소득이 불안정해서 최근에 소득이 줄었는데 인정되나요?

A. 사업소득은 국세청 종합소득으로서, 공적자료로 조회되는 '연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평균한 소득(금액)'을 반영합니다.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월 사업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참조〉 소득·재산 조사 항목

분류		항목	정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 중 농업·어업·임업을 제외한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	재산소득	이자배당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이자소득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등 사회보험성 급여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소득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공제	• 소득항목별 합산된 금액에서 근로 및 사업소득 합산 금액의 30%를 제외
재산	일반재산	건축물, 주택, 토지	• 「지방세법」제104조제1호, 2호, 3호에 따른 토지(논, 밭, 임야, 주택의 부속토지 등), 건축물(건물,시설물 등) 및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재산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재산	일반재산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분류		항목	정의
재산	일반재산	회원권	• 「지방세법」제6조제14호~제18호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자동차	자동차가액	• 「지방세법」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 금융권 대출금 〈금융권의 범위〉 – 제1금융권 : 특수은행, 일반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 : 보험회사, 신탁회사,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카드회사, 캐피탈회사, 리스회사, 할부회사, 신기술금융회사) – 대부(중개)업체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금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의 대출금

Q45 저는 프리랜서라서 월소득이 불규칙합니다. 이런 경우 소득을 어떻게 책정하나요?

A. 통상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으로 소득을 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p.5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46 가상화폐, 주식으로 인한 소득도 파악하나요?

A. 주식 등 금융자산의 이자·배당 소득의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을 통해 소득으로 산정하지만, 금융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47 추가 지출에 대한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이전소득도 조사 대상인가요?

A. 공적이전소득 조사대상 급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소득재산 조사

Q&A

Q48 부채 증빙서류에는 은행권, 카드권, 보험권 외 개인(또는 가족, 지인)간 차용 거래에 따른 증빙도 유효한가요? 증빙자료에 용도를 기재하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을 목적으로 한 부채도 인정되나요?

A.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 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출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또는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가 기재된 부채만 인정됩니다.

Q49 주택가격의 가액 기준은 공시지가인가요, 거래가인가요?

A. 시가표준액입니다.

*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건축물·시설물 등)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
- 확인방법: (토지·주택)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토지·주택 가격 확인
  (건축물·시설물 등) 위택스-지방세정보-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참고〉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p.5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0 청년 당사자와 부모의 재산 중 사업/생계를 목적으로 하는(공장, 자동차 등) 재산도 산정대상인가요?

A. 네. 모두 산정대상입니다. 소득·재산 산정과 관련된 내용은 〈참고〉 소득·재산 조사항목 및 확인방법 p.5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1 신청시 작성한 소득·재산 신고서 금액으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나요?

A. 신청인이 제출한 소득·재산 신고서는 참고용이며, 실질적인 소득·재산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집니다. 다만, 부채의 경우 신청시 제출한 금액(증빙자료 포함)만 인정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사항만(부채 포함) 입력

Q52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데 부모님의 소득, 재산을 조사할 경우 부모님께 통보가 가는지 걱정됩니다.

A. 부모의 소득·재산 조사 시 소득·재산 여부 및 조사 결과 등 내용이 부모님께 통보되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Q&A

Q53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하나요?

A.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 절차가 생략됩니다.

Q54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청년월세지원으로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할지 걱정됩니다.

A. 청년월세지원은 지원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지만, 금융재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5 저는 지자체 공무원 인데요. 지원대상자가 이사 후, 월세지원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A. (읍·면·동)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 및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 후 저장하면 됩니다.
(시·군·구) 사업팀에서 변경신청서를 접수하며,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확인(소득·재산 조사는 생략)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지) 하고, 급여일에 지원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3 | 지원 결정 및 통보 (시·군·구 사업팀)

▶ 신청서 접수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 생활실태조사 결과* 등의 **종합적인 조사 1회를 통해 월세지원 대상 결정**

* 공적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공적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사항 등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기타 소명자료를 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가구 방문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청년)주거급여 신규 신청인** 또는 수급여부 **조사 중인 자**가 월세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청년)주거급여** 수급여부 **결정·확인 후 월세지원 대상 결정**

▶ 월세지원을 신청한 청년을 중심으로 청년가구 및 원 가구의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결정

청년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선정기준

① 소득기준: 청년가구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② 재산기준: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독 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가액 등 총재산가액(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추가 인정)이 107백만 원 이하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선정기준

①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② 재산기준: 월세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의 원 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 총재산가액(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추가 인정)이 380백만 원 이하

▶ 조사결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청년월세지원 결정통지서”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

- 결정 통지 시 변경신청 및 이의신청 관련 안내
- 계약내용 또는 주소지 변경 등으로 변경신청한 경우에도 지원 결정 및 통보 필요

* 신청·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지원대상 여부 통보

지원 결정 및 통보

Q&A

Q56 가구규모별 청년가구(기준 중위소득 60%) 및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의 소득기준은 얼마인가요?

A. 소득·재산 조사결과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 100% 이하인 경우 지급 결정 선정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출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21.8.5)」 매년 8월 차년도 기준중위소득 제정 및 고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청년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원가구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 출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11호, '21.8.5)」 매년 8월 차년도 기준중위소득 제정 및 고시

Q57 지원받은 사실을 집주인이 알게 되나요? 지원받은 사실로 인해 월세를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A.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임대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Q58 지원받은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되나요? 지원받은 만큼 가족이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어서요.

A. 청년월세 지원은 당사자에게만 통보되며, 가족에게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4 |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시·군·구 사업팀)

지원내용

▶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주거급여 대상자** 등을 **확대**하여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의 수혜자가 청년월세사업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차감하여 지급**

* (서울) 서울형주택바우처, (경기) 시흥형 주거비지원사업,(전북) 전주형 주거급여, 남원형 주거급여 지원사업

본 사업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 총 240만 원까지 지급

1. **(주거급여 미수급자)**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큼 지급
   예) 월세가 10만 원일 경우, 10만 원 지원
2. **(주거급여 미수급자)** 월세가 20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금액인 20만 원 지원
   예) 월세가 30만 원일 경우 최대 금액인 20만 원 지원
3.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액(월차임임분) 20만 원 이상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없음
4.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월차임분) 20만 원 미만으로 지원받는 경우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
   예) 주거급여(월차임분)를 10만 원 지원받는 경우, 차액인 10만 원(20만 원-10만 원) 추가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여도 본 사업에 자동신청이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별도 신청 필요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22.8. ~ '23.8.
- **지원결정 통보** '22.10. ~
- **지급기간** '22.11 ~ '24.12.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월세 지원금 지급

▶ **지급일** 청년월세 지원금은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 **기본원칙** **신청월 기준** 청년이 **전월**에 旣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 **전월 월세분**에 대한 지원금은 **당월에 지급**(사후지원 원칙)

기본원칙 예시(8월 신청 가정)

1.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8월 이전인 경우)** 7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7월 기 납부한 월세를 8월부터 지급
   예) 최초 지급월이 11월인 경우, 청년이 기 납부한 7월분~10월분 월세를 11월에 지급
2.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8월인 경우)** 8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8월 기 납부한 월세를 9월부터 지급, 월세를 후납(9월 납입)하는 경우에는 9월 신청토록 안내
   예) 최초 지급월이 11월인 경우, 청년이 기 납부한 8월분~10월분 월세를 11월에 지급

- 지원대상이 (청년)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에 지급한 (청년)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월세 **지원금 지급** ※ 월세지원이 개시되는 월에는 신청월부터 기산하여 미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지급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처리절차 >

- 월세 지급자료(대상자, 금액, 계좌번호 등)는 변동사항을 적용하여 매월 지원금 생성일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자동 생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자동 생성된 지원금 지급자료 내역을 확인하여 확정 처리 후 전자결재
    * 월세는 실제 임차료(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를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월세액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청년 주거급여 수급 여부 등을 반영하여 지급
- 지원금 이체 및 지급은 시·군·구 회계부서가 담당하며,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을 통해 의뢰된 지원금 내역은 'e-지로시스템'(금융결제원) 또는 각 시·도 금고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파일을 전송하여 지급

※ 매월 월세 지급시 계좌 유효성 확인(실명 인증) 후 지급

▶ **거주지 변경** 지원대상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신고 및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시·군·구)가 전입일이 속하는 월의 월세지원

- 전입일이 **매월 15일 이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 **종전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
- 임대차계약이 변경되어 변경신고한 경우 당월은 종전 계약내용대로 지급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 내용은 익월부터 지급

*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 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알림 메시지 표출

** 급여생성일(매월 15일) 이전 전입신고 된 경우 수급자 정보 등이 새로운 거주지로 자동 이송(관리洞 자동 변경)

중복 방지

▶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 청년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 중복 지원은 불가능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사업 및 이자지원 등은 해당하지 않음

▶ 지자체 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여부는 각 지자체로부터 중복사업 수혜자 정보를 제공 받아 행복e음에서 확인 가능(수혜자 정보의 시스템 탑재는 신청서 접수 전에 조치, 이후 정기적으로 각각 업로드 예정)

지원금 지급 전 확인사항

▶ 보조사업자(시·군·구)는 **매월 월세를 지원하기 이전**(매월 15일 기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 필요

- 청년의 주소지 등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고, 그 이후 급여분부터 월세지원을 **일시 중지**하고 **변경신청*** **하여야 함을 안내**

* 월세지원 변경신청시 해당 신청일을 기준으로 월세지원 재개

◇ 예시(월세 지급일이 매월 10일)

1. **월세지원금 수령중, 10.5.에 타주소지로 전출(A시→B군)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급여 생성전)
   - 10월 급여지급전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었으나 전월 월세는 9월에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전입일이 15일 이전이므로, B군에서 10월 급여는 지급하고 11월 급여부터 중지
2. **월세지원금 수령중 10.20.에 타주소지로 전출(A시→B군)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급여 생성후)
   - 10월 급여지급전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었으나 전월 월세는 9월에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전입일이 16일 이후이므로, A시에서 10월 급여는 지급
   - B군에서 11월 급여부터 중지

- 청년가구의 주택 소유 등 지원제외 대상* 여부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월세지원 중지 절차에 따라 조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 가능한 공적자료만을 활용하여 확인

▶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청년)주거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청년 주거급여 수급으로 인한 **초과 지급분**을 **월세 잔여 지원금**에서 **차감** 후 지급(잔여 지원금이 없는 경우 환수)

월세지원의 중지

▶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 다음 달부**터 월세지원금을 **중지**할 수 있음

※ 월세지원 중지 사유

①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③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시·군·구)가 확인한 경우

④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⑥ 지원대상자가 사망·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⑦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잔여기간의 월세지원금 지급 재개

⑧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내용 변경 등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월세지원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⑨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Q&A

Q59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A.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지급중단 경우〉

①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③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 또는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시·군·구)가 확인한 경우

④ 부모와 합가(주민등록 여부 불문)하여 거주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⑤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⑥ 지원대상자가 사망·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⑦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만, 지원대상자가 임대인에게 연체된 월차임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잔여기간의 월세지원금 지급 재개

⑧ 타 주소지로 전출, 계약내용 변경 등 변경신청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월세지원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⑨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단,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제외)

Q60 제가 현재 조건에서는 지급대상인데 이후 계약 갱신/이사 등으로 월세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전세로 변경될 것 같아요). 이 경우 지급이 중단되나요?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A.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월세, 보증금 변동)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 및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변경신청(신고)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 청년가구의 가구원 중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포함)한 경우
- 부모와 함께 다시 가구를 합치는 경우
- 월세 없는 전세로 변경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월세환산액 70만 원 초과 포함)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한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Q&A

Q61 계약내용 변경된 경우, 어디에 변경신청 하면 되나요?

A. 온라인(복지로), 오프라인(관할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가능합니다.

※【참고자료2】'지자체 사업팀·대표번호·접수처' p.9 참조

- 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금액·기간 등)만 변경된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동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월세, 보증금 변동)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변경신청을 하고,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중지 신청서'(서식14) 제출)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2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취업을 하게 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변경신청이 필요한가요?

A. 월세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이미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만큼 이후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지급이 중지되지 않으며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63 6개월 급여 수급 후 중지 사유에 해당되어 지급 중지된 상황인데, 변경신청 하면 나머지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중지 사유가 해소가 되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하면 지자체에서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통지합니다.

Q64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월세가 납부된 증거가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전입신고는 필수사항으로 월세 납입 증빙서류만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후 즉시 변경신청 하여야 합니다.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Q&A

Q65 A시에서 살다가, B시로 이사하였습니다. 거주지 변경을 하면 될까요? 언제부터 B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지원대상자가 거주지를 변경한 후에는 1) 전입신고 후 2) 청년월세지원의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이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 지급 중지 및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입일이 매월 15일 이전인 경우 당월의 급여는 새로운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 당월의 급여는 종전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합니다.

Q66 저는 같은 곳에서 월세 금액/보증금만 변경되고, 신청기준을 충족하는데 그래도 임대차계약 변경신청을 해야하나요?

A. 네. 임대차계약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 반드시 온라인 및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지원기준에 여전히 적합하여야 하고, 지원금액에 변경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67 지원금을 받는 중에, 결혼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지원금을 받는 중에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에도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제출 필요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혼인(사실혼 포함)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직업상 사유로 청년과 배우자(청년)가 별도 거주하고 배우자가 최초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최대 20만 원씩 지원 가능(기존 대상자는 소득·재산 불필요, 신규 신청 배우자는 소득·재산 조사 필요), 다만 주택구입·전세주택 거주 등 지원제외 주택 거주 등 중지사유 발생시 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부부 모두 지원대상자로서 결혼하여 거주지 변경을 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가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1명만 지원(1명은 지원 중지)

** 부부 중 1인이 지원대상자로서 급여를 받고 있으며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서 거주한다면, 혼인, 가구원 변경의 사유로는 소득·재산 조사를 다시 시행하거나 지원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Q68 신청때와 달리 지급 받는 통장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A.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2】'지자체 사업팀·대표번호·접수처' p.9 참조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
Q&A

Q69 임대차계약은 했으나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시 최소 1개월분의 월세 납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아직 월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 후 신청하시면 되며, 신청 시기가 늦어졌더라도 지원 금액 및 횟수는 동일합니다.

Q70 제가 신용불량자라 제 통장으로 입금되는 월세지원금이 압류되므로 타인의 통장으로(같이 사는 가족, 친구) 지급가능한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리 수령 기준(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3촌이내의 방계혈족 명의로 입금 가능)에 따라 처리됩니다.

Q71 결혼 전 지원대상에서 탈락했는데, 결혼 후 조건이 맞는다면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A. 혼인(사실혼 포함)한 경우, '청년가구'만 소득·재산이 평가되며,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새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입증서류(사실혼 확인 판결문 등) 제출 필요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혼인(사실혼 포함)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 부부가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직업상 사유로 청년과 배우자(청년)가 별도 거주하고 배우자가 최초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20만 원씩 지원 가능

5 | 이의신청 (시·군·구 사업팀)

이의신청

▶ **신청기한** 보조사업자(시·군·구)의 처분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 보조사업자(시·군·구),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자, 시·도지사를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청

▶ **신청원칙**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서면으로 신청(대리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 **접수·심사**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① 시·군·구청장의 지원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처리

- **이의 신청인** 월세를 지원받는 대상자나 월세지원 신규·변경 신청한 자
- **이의 신청 기관과 방법** 시·군·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구 사업팀)에게 서면으로 신청
- **이의 신청 결정** 시·군·구청장으로 이의 신청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결정을 명하여야 함
- **이의 신청 통지** 상기의 처분 등을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이의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

②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과 처리

- **이의 신청인** 시·군·구청장의 이의신청 결정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 **이의 신청 기관과 방법**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시·군·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 **이의 신청 결정** 시·도지사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해당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함
- **이의 신청 통지** 시·도지사는 처분 등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 및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

※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준용하여 국토부장관이 결정 내용 통지

처리절차

▶ 가. 지원결정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Step 1 신청인
- 시·군·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식6)

Step 2 이의신청 접수 (시·군·구 사업팀)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Step 3 소득·재산 등 재확인 (시·군·구 통합조사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생성된 지급내역 확인

※ 이의신청 내용이 가구구성, 소득·재산 조사 등 통합조사팀 소관이 아닌 경우 절차 생략

Step 4 결과 통지 (시·군·구 사업팀)
- 이의신청인에게 30일내 처리결과 통보(서면 또는 문자)

※ 인용결정 후 대상자는 신청지급 절차에 따름

시·군·구 및 시·도, 국토부 이의신청 심의기구(TF) 운영

내용 이의신청 관련 일률적 판단이 곤란*한 개별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 및 시·도별, 국토부에 「이의신청 심의기구(TF)」 운영을 통한 심의·결정 필요

*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민원사례에 유연하게 대응

구성 〈시·군·구〉 청년월세지원 사업부서 과장(TF장)이 사업부서 공무원(1~2명), 통합조사팀 공무원(1~2명)을 지명하여 구성(3~5인) * 필요시 외부전문가 1~2명 추가 지명 가능

〈시·도〉 청년월세지원 담당 과장(TF장)이 담당부서 공무원(1~2명), 시도 복지 담당부서 공무원(1~2명)을 지명하여 구성(3인~5인) * 필요시 외부전문가 1~2명 추가 지명 가능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담당 과장(TF장)이 담당부서 공무원(1~2명), 주거급여 담당부서 공무원(1~2명)을 지명하여 구성(3인~5인) * 필요시 외부전문가 1~2명 추가 지명 가능

보완 **사업지침 및 매뉴얼에 없는 개별사례** 등에 대해 **심의·결정***

* 처리기준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심의·결정은 불가능

▶ 나. 시·군·구청장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Step 1 **신청인**	• 시·군·구의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식6)
Step 2 **이의신청 접수** (시·군·구 사업팀)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 신청서, 의견서 및 관련 서류를 10일내 시·도지사에 송부
Step 3 **이의 심사** (시·도 사업팀)	• 시·도지사 이의신청 심의
Step 4 **결과 통지** (시·도 사업팀)	• 이의신청인 및 시·군·구에 30일내 처리결과 서면 통보 ※ 인용결정 후 대상자는 신청지급 절차에 따름

▶ 다.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Step 1 **신청인**	• 시·도의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식6)
Step 2 **이의신청·접수** (시·도 사업팀)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 • 신청서, 의견서 및 관련 서류를 10일내 국토교통부에 송부
Step 3 **이의 심사** (국토부 청년정책과)	• 국토교통부 이의신청 심의
Step 4 **결과 통지** (국토부 청년정책과)	• 이의신청인 및 시·도에 30일내 처리결과 서면 통보 ※ 인용결정 후 대상자는 신청지급 절차에 따름

유의사항

▶ 이의신청 대상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은 신청(변경신청 포함)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

※ 이의신청이 인용 결정된 경우 인용 결정시 인정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미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지급

▶ 급여액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 인용 결정된 경우, 새로운 주소지 시·군·구에서 변경신청 이전급여까지 소급 지급

※ 이의신청이 종료되기 전까지 급여지급 중지

이의신청
Q&A

Q72 이의신청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A. 대상자께서 이의신청을 원하실 경우, 서면으로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서식 6, p.89 참고)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가구구성 및 소득·재산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심사합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드립니다.

1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시·도지사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시 시·도 사업팀에 제출
2	시·군·구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 통지 및 지원금 지급,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송부
3	시·도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심사 및 결정 통지, 시·도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시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자료 송부
4	국토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 심사 및 결정 통지

Q73 이의신청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도, 시·군·구 사업팀이란 어디인가요?

A. 이의신청서(서식6 p.89 참고)를 작성하여 시·군·구 및 시·도 사업팀(【참고자료2】 '지자체 사업팀·대표번호·접수처' p.17)에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Q74 이의신청은 우편, 방문, 이메일 모두 가능한가요?

A. 서면 신청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방문 또는 우편(이메일 포함)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Q75 이의신청이 30일 이내 가능한데, 30일 산정에 공휴일 등도 포함되나요?

A. 네. 이의신청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능하며, 공휴일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Q76 이의신청 기간 중 이사 하였을 경우 급여 지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이 보조사업자(시·군·구)의 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보조사업자가 심사하는 기간 중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을 경우 이의신청을 접수한 이전 주소지 보조사업자가 이의신청 처리절차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인용 결정된 경우 급여는 새로운 주소지 보조사업자가 이전 주소지의 급여분까지 소급 지급합니다.

예시 1) 전입신고(○), 변경신청(○) 경우: 새로운 주소지 보조사업자가 전입신고 月의 급여분까지 이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소급 지급하고, 익월(또는 변경신청 月) 급여분부터는 새로운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

예시 2) 전입신고(○), 변경신청(X) 경우: 새로운 주소지 보조사업자가 전입신고 月의 급여분까지 이전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소급 지급하고 월세지원 중지

6 | 사후관리 (시·군·구 사업팀)

집행 및 정산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청년월세를 지급한 관할 시·군·구에서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사후정산

※ 국고보조금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환수

▶ **환수원칙** **월세지원금 과다지급**이 확인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사업자**(시·군·구)는 이미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반환)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원칙적으로 환수(반환)사유가 발생한 시·군·구청장이 환수(반환)

※ 본 지침외 기타 환수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름

▶ **환수절차**

❶ **사전통지:** 시·군·구는 환수 결정 전 **처분내용** 및 **의견제출 기간 등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 * (필수 기재사항) 환수 원인·금액, 의견제출 기간·절차 등

❷ **의견제출:** 환수대상자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군·구에 **의견진술 가능**(「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1조제3항)

❸ **환수결정·통지:** 기한 내 **의견 미제출** 또는 의견 **내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는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반환)결정·통지**

※ 보조금 반환을 명한 경우 10일 이내에 시·도에 통보

❹ **이의신청:** 환수대상자는 **환수(반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 시·군·구는 환수통지 시 이의신청 절차 안내 및 이의신청 서식 동봉

❺ **징수처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적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의3제1항)

- **월세지원금**이 **과다지급**된 경우, **우선 지원금 잔액***에서 차감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현금으로 반환

> * 임대차계약서상 지급 예정 급여가 있는 경우를 말함(ex.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 기간: 10개월, 기지급: 6개월, 미지급: 4개월 ☞ 잔액=급여액/월×4개월)

Step 1
환수대상 확인 및 사전통지
(시·군·구 사업팀)
• 환수대상자에게 반환 등 제재 관련 사항을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①)
Step 2
의견제출
(환수대상자)
•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의견제출(행정절차법 제27조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1조③)
Step 3
환수결정 및 반환명령 통지
(시·군·구)
• 반환금액 및 납부방법을 환수대상자에게 서면 통지
• 시·군·구가 반환명령한 경우, 그 사실을 시·도에 통보(10일 이내)
Step 4
이의신청
(환수대상자)
• 반환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Step 5
징수처리
(시·군·구)
• 납입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징수금액 처리 또는 결손처분

사후관리

Q&A

Q77 환수대상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A. 본 사업의 환수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지원 사업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
- 부채 증빙을 잘못한 경우
- 거주지 변경, 계약 내용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 신고
- 이 외 부정수급,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 법에 의한 환수대상, 과다지급 된 경우

Q78 제가 2달 전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받지 못한 달의 지원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의신청 대상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처분은 신청(변경신청 포함)한 날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이의신청이 인용 결정되면, 인정된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미지급된 지원금 전부를 지급합니다. 급여액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변경한 이후 인용 결정된 경우라면, 새로운 주소지 시·군·구에서 변경신청 이전급여까지 소급 지급합니다.

Q79 제가 A시에서 이의신청을 했는데, B시로 이사한 후에 인용이 결정된 경우 다시 A시에 신청하러 가야하나요?

A. 아니요. 이의신청을 A시에서 하셨다면, 결과는 A시에서 통보됩니다. 인용이 결정되었다면 B시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하시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80 이의신청이 인용 결정되면 제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다시 지급신청을 해야하나요?

A. 이의신청이 인용결정 되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81 제가 환수 서면 통보를 뒤늦게 확인했는데 이미 20일이 지났어요. 이의신청이 필요한데 어떡하죠?

A. 환수(반환)결정 통지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20일)이 경과하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hapter III

기관별 주요 역할

시·도

▶ 가. 사업관리
-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관리
- 예산편성, 자금배정 지원 및 정산관리
- 사업 집행현황 모니터링 및 상황보고(시·도 → 국토부)
- 시·군·구 지원(특·광역시·도)
- 수급 상황 파악 및 시·군·구 간 수급 조절

▶ 나. 행정지원
- 시·군·구 등 전담인력 지원, 전용창구 설치 지원
- 시·도 및 시·군·구에서 旣지원한 청년월세 대상자 등 행복e음 입력
- 코로나19 방역대책 수립·시행 및 지원(기 수립된 방역대책이 있는 경우 준용 가능)

▶ 다. 대민홍보
- 시·도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 우수사례 중심 기획홍보, 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조기 대응

시·군·구

▶ 시·군·구 단위 실행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지원금 집행

▶ 읍·면·동 전담인력 지원, 전용창구 설치 지원 및 대표번호 개설·운영

▶ 월세지원 신청서 및 변경신청서 접수

▶ 월세지원 여부 결정·지원금 지급 및 이의신청 접수·처리 등 사후관리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급결정 일자별 대상자 명단 제공

※ 내용 : 신청인, 주소, 지원금액, 수령 장소 등

▶ 신청 및 지급 현황 관련 상황보고(시·군·구 → 시·도) 및 대민홍보 추진

읍·면·동 주민센터

▶ 월세지원 신청서 등록·저장

▶ 신청현황 상황보고(읍·면·동→시·군·구)

▶ 업무관리자 및 담당자 지정·운영, 역할분담

▶ 통·리·반장을 활용한 읍면동 단위 홍보계획 수립·시행
- 신청·지급 방식 안내 등

Chapter III

개인정보보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공통 업무안내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용

서식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

(2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청년)주거급여 수급여부	(○, ×)	보장기관 (시 · 군 · 구)					
	지자체 월세지원기 수혜여부	(○, ×)	해당 지자체				전자우편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세대주와 동거여부 (미동거사유)	학력 · 재학여부	직업
가족구성[1]	청년가구						
		배우자 관계[2]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원가구						

	주택유형		임차보증금	월세	임차면적	비고[3]
거주조건 등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다중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원	원	㎡	
	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임대차기간	. . . ~ . . .		
	기타	□쪽방 □여관 · 여인숙 □기타( )	계약일자	. . .	전대차 여부	(○, ×)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4]
지급계좌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작성방법

1) 청년가구: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2) 해당자에 한함

3)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주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4) 청년 본인명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조사업자(시 · 군 · 구)가 확인하는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계좌(CDA) 등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5) 거주지 · 계약조건 변경 등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 거주조건 · 지급계좌란만 작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조사업자(시 · 군 · 구청장)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주거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월세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 국세(사업자등록정보,임차보증금 포함)·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할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4.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 주거급여 수혜여부 결정 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여부를 결정하며, 월세지원금 지급시 주거급여액중 월차임분을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5.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한 월세지원을 받은 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월세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 서류 ㅇ 청년이 미혼인 경우: 청년본인 및 부 ·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ㅇ 청년이 기혼인 경우: 청년, 배우자, 청년의 부 · 모 및 배우자의 부 ·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2. 소득 · 재산신고서 3. 위임장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5. 건축물대장 · 건축물현황도 및 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인 경우에 한함) 6. 최근 3개월간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8. 부채 증빙 서류

서식2 **위임장**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 ]	이의신청 [ ]	확인서 발급 [ ]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및 위임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3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 신청서

수급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신청 사유	[ ] 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을 받은 자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자 [ ] 수급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 수급자가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개월간)		

※ 아래 후견인란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만 작성합니다.

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대리 수령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수급자와의 관계	

지급계좌
금융회사( ) 계좌번호( )

본인은 위와 같이 청년월세지원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급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피성년후견인인 사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사실
3. 신청인이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1.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4 **소득 · 재산 신고서**

소득 · 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1]						
신청인과의 관계						
소득사항	근로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사업소득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재산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2]	원	원	원	원
재산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원	원	원
		선 박	원	원	원	원
		토지	원	원	원	원
		항공기	원	원	원	원
		자동차	□ 차량명( )	□ 차량명( )	□ 차량명( )	□ 차량명( )
		임차보증금	□ 전 · 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 전 · 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 전 · 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 전 · 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원	원	원
		조합원 입주권	원	원	원	원
		회원권	원	원	원	원
부채[3]		금융기관 대출금	원	원	원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원	원	원

위와 같이 소득 · 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1) 제1호서식 월세지원 신청(변경)서에서 작성한 가구원(원가구 · 청년가구)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연금 · 급여 · 기타 금품(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등)
3) 부채의 용도가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대출인 경우만 작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5 청년월세지원 결정통지서

[1 면]

청년월세지원 [ ] 결정(적합) [ ] 결정(대상제외) [ ] 변경·중지·상실 통지서

신청인/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1. 귀하가 신청한 지원금에 대한 조사 결과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지원대상자	생년월일	지원금액	지원개시일
	개인별 성명 전체 명시			

* 청년월세 지원 결정사항은 시 · 군 · 구청장이 통지

2.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 · 재산 및 임대차 계약조건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또는 시 · 군 · 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을 초과하거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격이 중지, 변경 되거나 지원금이 감소 될 수 있습니다.

- 중지 : 외국에 최근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신고 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해당 사실을 보조사업자(시 · 군 · 구)가 확인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망·이민 등으로 지원금이 필요 없게 되거나 지원대상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거주지 · 계약조건 등이 변경되었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

- 변경 : 전출입 등으로 임대차 계약조건이 변경 있는 경우 등

3. 변경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중은행 · 우체국 · 신협 ·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개설 후 관할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또는 시 · 군 · 구)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지원금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대 상 제 외

신청내용	
대상제외 사유	[ ] 월세계약 종료 [ ] 자격심의결과 지원 자격 미인정 [ ] 기타( )
안 내	1.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청년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월세계약 체결 등 개인여건 변동으로 청년월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지원기준에 적합할 시는 청년월세 지원금을 제공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변경 · 중지 · 상실

[ ] 변 경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유	[ ] 청년 본인의 전·출입 등 거주지 변동 등 [ ] 계약내용 변경 [ ] 기타( )		
[ ] 중 지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유	[ ] 교정시설 수용 등 주거실태의 변동 [ ]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 최근 6개월간 통산 90일초과 해외체류 [ ] 보호대상자의 지원 중지 요청 [ ] 보조사업자(시 · 군 · 구) 등의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를 거부·기피 ·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 청년월세지원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 지급받은 월세지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 [ ] 기타( )	
[ ] 상 실	일자	년 월 일 부터	내 용	
	사유	[ ] 사망 [ ] 국적상실 [ ] 국외이주 [ ] 소득·재산 등 선정기준 초과 [ ] 난민법제18조에 의한 난민인정자 중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 ] 기타(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청년월세 지원 신청(변경)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청년월세 지원 :** 지원결정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보조사업자(시 · 군 · 구)에게, 보조사업자(시 · 군 · 구)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자(시 · 군 · 구)를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을 말함)에게 서면으로 신청
   2)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해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 · 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지원기간 중 월세계약 내용 변동, 지급정지 사유의 소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시·군·구(읍·면·동)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소속부서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6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처 분 내 용		[ ] 선정 [ ] 지원변경/중지/정지/상실 [ ] 환수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1. 보조사업자(시 · 군 · 구), 시 · 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 시 · 도지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2. 시 · 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 · 군 · 구청장, 시 · 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조사업자(시 · 군 · 구)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조사업자(시 · 군 · 구)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7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예정된 처분의 제목</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당사자</td><td>성명(명칭)</td><td colspan="5"></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td><td colspan="6"></td></tr>
<tr><td>처분하고자 하는 내용</td><td colspan="6"></td></tr>
<tr><td>법적근거 및 조문내용</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4">의견제출</td><td rowspan="3">제출처</td><td>기관명</td><td></td><td>부서명</td><td></td><td>담당자</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전자우편 주소</td><td colspan="3"></td><td>팩스번호</td><td></td></tr>
<tr><td colspan="2">제출기한</td><td colspan="5">년 월 일까지</td></tr>
</table>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8 **의견제출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9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이의 신청일	
처 분 내 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결정 결과	[ ] 처분 취소·변경 [ ] 기각 [ ] 각하
이의신청 결정 사유	<별지 작성 가능>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 ·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소속부서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참고 사항	• 기각 :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 각하 :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10 **환수통지서**

청년월세 지원금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　　차)

<table>
<tr><td rowspan="3">청년월세 지원 대상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생 년 월 일</td><td colspan="4"></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지원내용</td><td colspan="5"></td></tr>
<tr><td>환수(반환) 사　유</td><td colspan="5"></td></tr>
<tr><td>환수결정액</td><td colspan="2">원</td><td rowspan="3">납부장소</td><td colspan="2" rowspan="3"></td></tr>
<tr><td>기 납부액</td><td colspan="2">원</td></tr>
<tr><td>납부액</td><td colspan="2">원</td></tr>
<tr><td>납부기한</td><td colspan="2">년　　월　　일까지</td><td>산출내역</td><td colspan="2">별첨</td></tr>
</table>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금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11 **대상자 확인서 발급신청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제출용도	용도	
	제출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대상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확인서 발급 신청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증명서 발급
신청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

서식12 **대상자 확인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확인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지원내용	지원금액	월 원		
	지원기간	년 월 ~ 년 월		
제출용도	용 도			
	제 출 처			

위 사람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13 **서약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 서약서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유 의 사 항 >

-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동일 주소지에서 계약내용 변경사항도 포함) 등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부모와 합가, 주택 소유, 군복무 등 월세지원의 중지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변동사항 미신고 또는 신고내용이 부정확한 경우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지원금 환수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 .

성명 (서명)

서식1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지 신청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지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수급자	성명		생 년 월 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신청사유	[ ] 부모와 합가 [ ] 청년가구 구성원중 1인이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소유 [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 거주 [ ] 이사 등으로 전세주택·공공임대주택 등 제외대상 주택 거주 [ ] 기타( )	

위와 같은 사유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중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급자와의 관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유의사항

1. 중지사유 해소시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잔여 기간동안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중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